

의료보험본인부담정액제 작성요령

본 협회는 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의료보험 본인부담정액제 진료비명세서 작성에 대하여 보사부에 건의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으니 진료비명세서 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구분, 작성 및 편철

(1) 진료비명세서는 반드시 진료월단위로 작성 청구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정액제 해당진료비명세서는 각 명세서마다 우측하단에 (정액)이라고 표기한다.

이 경우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진료비명세서는 하단 “녹색 또는 갈색띠”를 1/2 길이로 줄인다.

(3)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되는 진료비명세서와 본인부담 정율제에 해당되는 진료비명세서는 각각 다른 진료비명세서에 1매씩 분리작성한다.

(4) 동일수진자가 동일월에 본인부담정액제 해당진료일과 본인부담정율제 해당진료일이 있으면 정액제 해당진료일분은 1매의 정액제진료비명세서에, 정율제 해당진료일분은 1매의 정율제진료비명세서에 각각 분리 작성하되, 방문당 총진료비가 정액 본인일부 부담금으로 고시한 금액이하일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청구할 진료비용은 없으나 당월 전체 진료비 내역을 연계심사할 수 있도록 해당진료비명세서 내역란 하단에 진료일자, 진료내용, 진료비를 명기하되, 정액본인 일부부담금으로 고시한 금액이하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진료비명세서의 내원일수,재진일, 1.진찰료란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13. 총진료비, 14. 본인일부부담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정율제 해당진료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종전 정율제 진료비명세서 작성요령과 같이 한다.

(주: 종전 정율제 진료비명세서라 함은 '85년 12월분까지 청구한 진료비명세서 작성요령을 말함)

(6) 정율제 해당자 진료비명세서, 정율제와 정액제 해당자 진료비명세서, 정액제 해당자 진료비명세서 순으로 묶으며, 정율제와 정액제 해당

자 진료비명세서는 월간 진료비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동일 수진자의 정율제 진료비명세서 바로 다음장에 정액제 진료비명세서가 나오도록 편철되어야 한다.

(7) 야간 또는 공휴일 진찰료 가산시에는 진찰료 금액란 바로 우측 공간에 그 회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8) 당월진료개시일은 동일인일지라도 정율제 해당 진료비명세서, 정액제 해당 진료비명세서 별로 각각 작성될 경우에는 해당 각 진료비명세서의 해당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9) 당월진료기간란에는 해당 진료비명세서상의 해당 투약일수를 포함한 진료기간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당월내원일수란에는 해당 진료비명세서상의 해당 내원일수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위 (1), (5), (7), (9), (10), (11)항은 모든 요양취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며 기타항은 “의원급”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12) 기타사항은 종전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의료보험증검인” 안내

의사의료보험조합 가입회원의 의료보험증검인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기간내에 빠짐없이 검인을 받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도	조 합 원 수	검인일자	검 인 장 소
합 계	2,271		
서 울	1,132	86. 6.9- 86. 6.27	의사의료보험조합 사무국
종로구	118	86. 6. 9	“
중 구	97	86. 6.10	“

용산구	51	86. 6.11	”	강동구	102	86. 6.27	”
성동구	53	86. 6.12	”	부 산	232	86. 6.18	부산시치과의사회
동대문	72	86. 6.13	”	대 구	154	86. 6.26	대구시치과의사회
성북구	40	86. 6.14	”	인 천	64	86. 6.14	인천시치과의사회
도봉구	43	86. 6.16	”	경 기	179	86. 6.20	경기도치과의사회
은평구	40	86. 6.17	”	강 원	46	86. 6. 9	강원도치과의사회
서대문	51	86. 6.18	”	충 북	39	86. 6.16	충북도치과의사회
마포구	35	86. 6.19	”	충 남	105	86. 6.19	충남도치과의사회
강서구	55	86. 6.20	”	전 북	55	86. 6.11	전 북 도 의 사 회
구로구	45	86. 6.21	”	전 남	88	86. 6.13	전 남 도 의 사 회
영등포	59	86. 6.23	”	경 북	78	86. 6.26	경북도치과의사회
동작구	39	86. 6.24	”	경 남	83	86. 6.25	경남도치과의사회
관악구	46	86. 6.25	”	제 주	16	86. 6.20	제 주 도 의 사 회
강남구	186	86. 6.26	”				

國民精神教育 9大德目

	○ 主	人	精	神
똥똥한 韓國人	○ 名		譽	心
	○ 道		德	心
다함께 사는	○ 協	同	精	神
	○ 使		命	感
	○ 遵	法	精	神
나라와 계례의	○ 愛		國	心
나아갈 길	○ 反	共	精	神
	○ 統	一	意	志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 ▷